

| 현행(제2-1판) | 개정안(제3판) | 개정 사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※ 본칙 개정 사항에 근거하여 붙임 일괄 적용 | | |
| 3.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| | |
| <p>3-1. 원칙</p> <p>○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수동감시 대상이나, 일정 요건(3-2) 미충족 시 자가격리로 전환하며, 최종 접촉일로부터 6~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</p> | <p>3-1. ----</p> <p>○ 일정 요건(3-2)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. 따라서, 일정 요건(3-2)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,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~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</p> | <p>(환자관리지침팀) 원칙 명확화</p> |

| 현행(제2-1판) | 개정안(제3판) | 개정 사유 |
|---|--|---|
| <p>3-2. 수동감시 실시</p> <p>○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유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무증상일 것</p> <p>②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</p> <p>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</p> <p>④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(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)</p> <p>(신설)</p> </div> <p>3-3. 수동감시 중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</p> <p>① 최종접촉일로부터 6~7일차에 PCR검사 실시*</p> <p>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</p> <p>* 접촉자 분류일이 6~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,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</p> | <p>3-2. -----</p> <p>○ -----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)</p> <p>예) 예방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.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</p> <p>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*(장기요양기관 등)의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가 아닐 것</p> <p>※ 감염병예방법(제42조, 제47조, 제49조)에 따라 지자체(시도, 시군구)는 고위험 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</p> </div> <p>3-3.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</p> <p>①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-----</p> <p>* -----</p> <p>* 단,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(역학조사관)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(격리해제 전 검사 등)</p> <p>* 고위험집단시설(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시설, 장애인시설, 교정시설 등)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</p> | <p>(역학조사팀) 수동감시 요건 개정</p> <p>(역학조사팀) 추가 검사 및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사항 개정</p> |

| 현행(제2-1판) | 개정안(제3판) | 개정 사유 |
|---|--|---|
| 4. 해외입국 관련 사항 | | |
| <p>4-2. 능동감시 실시</p> <p>○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</p> <p>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 예) 예방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입국일이 9.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</p> <p>② 무증상일 것</p> <p>③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</p> <p>* "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"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: 공문(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)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 내 공지사항·'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')(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)</p> | <p>4-2. -----</p> <p>○ -----</p> <p>① ----- --> 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*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</p> <p>※ 국내 예방접종완료자(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)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적용</p> <p>* 해당 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: 공문(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)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 내 공지사항·'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')(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) 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</p> | <p>(해외출입국관리팀) 수동감시 요건 개정</p> <p>(검역정책과4406) (2021.9.17.)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</p> |